

건강·국민연금보험료 연체금 미부과 등

● 개요

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적용사업장 중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연체금 미부과(징수 예외) 또는 체납처분 유예

● 지원대상

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기업

● 지원내용

-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체납 시 연체금 미부과
* 관광·공연업은 '20.3월분~'21.3월분 체납보험료, 항공기취급업 등은 '20.4월분~'21.3월분 체납보험료에 대해 연체금 미부과
-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동안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
(국민연금보험료는 체납처분 유예 대상 아님)
-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일 이후 새로운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지정일 이전 유효한 체납처분 건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절차를 중지*
*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일 이전의 체납처분 건에 대해서는 다음 단계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뿐이며 체납처분을 취소하거나 해제하는 것은 아님

● 지원(신청)절차

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관할 지사에 연체료 미부과 또는 체납처분 유예 신청

● 지원문의

국민건강보험공단 : 1577-1000